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12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13일

3. 제안이유

○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분배소 폐지 및 경보통제소 기능보강 등 새로운 경보운영체제 확립에 따른 민방위 경보요원의 정원을 조정 재배치하고,

○ 지방재정의 중복투자 방지 및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심사 업무의 전담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정원의 총수 : 2,410명 ⇒ 2,413명 (3명 증원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00명 ⇒ 1,403명 (3명 증원)
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14명 ⇒ 914명 (변동 없음)
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 없음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2명 (변동 없음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민방위 경보시설 분배소 축소(충주·옥천)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에서 사업중단이 많았던 점이 지적되어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를 위하여

- 민방위 경보통제소 경보요원 2명 보강과
- 투자심사 전담인력 보강 1명을

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행정자치부의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지침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축소에 따른 감축되는 인력 1명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 또는 특정 시군에 재배치하여 재난·재해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조치토록 시달되었음에도, 도 경보통제소에 배치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